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56457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원고인수참가인B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E

변론 종결2021. 7. 20.

판결 선고2021. 9. 7.

주 문

1. 원고 및 원고인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인수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171,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인수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42,869,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2017. 7. 26.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G, H에 있는 "I, J 빌딩 개발사업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2,1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8. 6. 2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와 F은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1) 2018. 6. 28. 공사기간을 2018. 8. 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 (2) 2019. 8. 6. 계약금액을 8억 2,170만 원에서 7억 8,870만 원으로 3,300만 원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8. 2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 (3) 2019. 10. 15. 준공정산에 따라 정산금액을 7억 8,870만 원에서 8억 4,590만 원으로 5,72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정산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상호 K)는 피고와 (1) 2018. 2. 26. "이 사건 공사 내 경량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2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하도급계약 및 (2) 2018. 5. 31. "이 사건 공사 내 수장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372,328,573원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각 공사를 하였다.

다. 각 정산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9. 6. 11. 원고인수참가인이 동석한 가운데 위 나.항의 각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라고 한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정산합의서

가)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내 경량공사

다) 공사기간: 2018. 2. 26. ~ 2018. 8. 21.

라) 정산관련사항

A.	계약금액	238,000,000
B.	지급금액	206,883,500
C.	노임직불 공제 금액 (F 직접지불금액)	20,130,000
D.	간접비 공제금액 (증빙서류 미제출에 의한 공제)	3,750,205
E.	폐기물 공제금액	5,000,000
F.	안전장구류 지급 공제금액	500,000
G.	정산 잔여 금액 [G= A-(B+C+D+E+F)]	1,736,295

바). I, J빌딩 개발사업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 내 경량공사(이하 "본 공사"이라 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이하 "갑"이라 함)와 K (이하 "을"이라 함)은 위의 내용 ("라). 정산 관련 사항")을 근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정산 잔여 금액("라). G항목" 참조)은 "을"의 협력업체 인 L (사업자등록번호 1) 대표 B 측에게 "갑"에서 1,736,295 (일백칠십삼한 유천이백구십오원정)을 직접 지불하는것에 대해 합의합니다.

(2문 생략)

■ 정산합의서

가)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내 수장공사

다) 공사기간: 2018. 2. 26. ~ 2018. 8. 21.

라) 정산관련사항

A.	계약금액	372,328,573
B.	지급금액	322,970,072
C.	노임직불 공제 금액 (F 직접지불금액)	22,952,320
D.	간접비 공제금액 (증빙서류 미제출에 의한 공제)	4,928,574

A.	계약금액	372,328,573
E.	폐기물 공제금액	10,000,000
F.	안전장구류 지급 공제금액	500,000
G.	정산 잔여 금액 [G= A-(B+C+D+E+F)]	10,977,607

바). I, J빌딩 개발사업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 내 수장공사(이하 "본 공사"이라 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이하 "갑"이라 함>와 K (이하 "을"이라 함)은 위의 내용 ("라). 정산 관련 사항")을 근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정산 잔여 금액("라). G항목" 참조)은 "을"의 협력업체 인 L (사업자등록번호 1) 대표 B 측에게 "갑"에서 10,977,607 (일천구십칠만 칠천육백칠원정)을 직접 지불하는것에 대해 합의합니다.

(2문 생략)

라. 원고는 2019. 10. 4.경부터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1.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 중 42,869,336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2. 17. 이 법원에 원고 인수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한바, 이 법원은 2021. 2. 23. 원고 인수참가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 중 42,869,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F은 위 가.항의 정산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정산금액 5,720만 원을 2019. 10. 21. 4,04만 원, 2019. 12. 20. 1,716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1) 추가공사대금 62,171,016원 및 2) 부당 공제한 폐기물처리비 1,500만 원,

합계 77,017,0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2018. 10. 31.까지 위 1.의 나.항 기재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피고와 F이 추가로 요청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각 정산합의서는 당초 약정한 "본 공사"에 관한 것일 뿐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추가공사대금 114,385,636원의 지급을 F에 요청하였고, F은 62,171,016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고 공사금액에 이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폐기물처리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하도급공사계약서의 내역서 상에 폐기물처리비를 책정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각 정산합의서에 폐기물처리비 1,500만 원을 부담하게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 공제한 폐기물처리비용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인수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한 위 2. 가.항 1)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42,869,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바,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다시 F에 각 실정보고를 하여 인정을 받으면 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정보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는 F, 피고, 원고가 모두 합의하여 실정보고 없이 진행된 '무대 및 무대공사에 따른 계단공사' 외의 추가공사를 부인한다.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2018년 11월에 마무리된 후 2019. 6. 11. 작성되었고, 추가공사인 위 무대 및 계단공사 부분도 정산에 포함되었으며, 위 각 정산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모든 정산이 종료되었다.

2) 폐기물처리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청소는 이를 원고가 처리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F이 처리한 후 피고에게 처리비 4,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중 1,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수급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무대 및 무대공사에 따른 계단공사'(다만 피고는 이 부분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원고나 그 직원, 원고인수참가인이 작성하여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각 내용증명우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제외하면, 갑 제4, 5, 11, 12, 15, 16호증이 남는다.

2) 갑 제15호증(추가공사 자재발주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발주서는 단가와 금액란이 공란이고 그 상대방이 원고인수참가인(L)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실제 발주여부나 발주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3) 나머지 갑 제4, 5, 11, 12, 16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F에 추가정산을 요구하면서 이들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과 여기에 파일로 첨부되었던 '추가정산내용' 등(이는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M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인데, 원고는 그중 갑 제5호증의 일부인 "C 요청사항"의 '추가반영'란 기재 62,171,016원을 근거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C 요청사항"은 F의 공무과장인 N이 2019. 4. 22. 원고측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의 일부이고 피고가 작성한 '변경내역서' 등의 다음에 붙어 있었던 사실, 위 변경내역서는 2018. 11. 9.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F에 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8억 2,170만 원을 948,033,112원으로 157,331,545원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인 사실, 위 '변경내역서' 등의 다음에 붙어 있는 "C 요청사항"에는 '요청(증액) 금액'이 합계 114,385,636원, '추가반영'이 합계 62,171,016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C 요청사항"의 '추가반영' 부분은 F측이 피고의 증액요청을 검토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의 가.항 2)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위와 같이 증액된 적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위 이메일이 송부된 2019. 4. 22. 이후인 2019. 8. 6.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8억 2,170만 원에서 7억 8,870만 원으로 3,300만 원 감액하였고, 2019. 10. 15.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정산금액을 7억 8,870만 원에서 8억 4,590만 원으로 5,720만 원 증액하였으나 위 8억 4,590만 원은 당초의 계약금액 8억 2,170만 원과 비교하면 불과 2,470만 원이 증액된 금액에 불과하고, 그 증액 내역이 원고가 한 하도급공사와 관계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위 증액 부분이 폐기물처리, 청소 등과 관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결국 피고와 F이 정산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일부에 불과할 뿐 이들의 변경계약내용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기에 기재된 62,171,016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게다가 위 62,171,016원에는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악세스후로아(전성타일마감)추가', 'OA 플로어 수정 및 재시공'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밖에 갑 제4,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역시 피고와 F이 정산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 사이의 변경계약내용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나. 폐기물처리비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을(수급인, 원고)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도급인, 피고)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F 등은 2018.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피고 등에게 선투입한 청소비용의 업체별 부담부분을 통보하였는데, 그 중 피고에게 청구한 비용이 2018년 5, 6, 7월 합계 3,809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 '폐기물 공제 금액'이 각 500만 원 및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1.의 나.항 기재 각 공사를 시공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처리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폐기물 관련 비용 중 1,5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이를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피고와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1,5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합의에 따른 폐기물 관련 비용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폐기물처리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인수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